

소규모합병 반대의 통지 접수를 위한 주주확정 기준일 및 주식 명의개서정지공고

본 회사는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 롯데첨단소재 주식회사와의 소규모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하여,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5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준일을 설정하고,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

다음

1. 주주확정 기준일: 2019년 9월 6일
2. 주주명부 폐쇄기간: 2019년 9월 9일~2019년 9월 11일

일자: 2019년 8월 22일

롯데케미칼 주식회사
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00(신천동)
대표이사 임 병 연

명의개서대리인: 주식회사 KEB하나은행
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
대표이사 지 성 규